

순천대학교 교수회규정

제정 2003. 10. 6. 개정 2005. 1. 5. 개정 2011. 5. 30.
개정 2012. 8. 29. 개정 2013. 6. 12. 개정 2013. 12. 31.
개정 2014. 3. 27. 개정 2017. 7. 14. 개정 2018. 2. 28.
개정 2018. 3.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순천대학교 교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29)

제2장 조직

제2조(구성) 교수회는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이하 “교수”라 한다)로 구성한다. 다만 명예교수, 그 밖의 비정규 교수는 제외한다. (개정 2012. 8. 29)

제3조(임원) ① 교수회에 의장 1명, 부의장 1명, 사무처장 1명을 둔다.

② 의장은 교수회를 대표하며 교수회와 교수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평의회에서 임시의장단을 선출한다.

⑤ 사무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교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임원은 이 대학의 어떠한 보직도 겸할 수 없다.

⑧ 총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임원은 총장후보자 접수 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단, 총장 유고 시는 유고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개정 2013. 6. 12, 2013. 12. 31)

제4조(의장의 자격 및 선출) ① 의장은 교수회 구성원 중에 입후보하여, 교수회에서 무기명·직접·비밀투표로 재적교수(1개월 이상 장기출장·휴직 중인 교수는 제외한다)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개정 2012. 8. 29, 2017. 7. 14., 2018. 3. 23.)

②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하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동일 수 득표에 의해 2명을 초과하여 득표자가 나올 경우 이들 동일 득표자 전원을 결선투표 후보자로 한다. (개정 2018. 3. 23.)

③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상위 직급자를 당선자로 하되, 동일직급인 경우에는 이 대학교 발령일이 먼저인 자를, 발령일이 동일하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신설 2018. 3. 23.)

④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 그 선출은 재적교수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8. 3. 23.)

⑤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 선출한다. 다만, 재공고 선출의 경우 제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3.)

⑥ 재공고에도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차기 평의회를 구성하여 평의원 중에서 추천하여 재적 평의원 과

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신설 2018. 3. 23.)

제5조(의장의 개선) ① 의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그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개정 2018. 2. 28., 2018. 3. 23.)

② 의장의 임기 중 사임·자격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임 의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 7. 14., 2018. 3. 23.)

③ (삭제 2018. 3. 23.)

1. (삭제 2017. 7. 14.)

2. (삭제 2017. 7. 14.)

3. (삭제 2017. 7. 14.)

④ (삭제 2017. 7. 14.)

제6조(부의장·사무처장의 선출) ① 부의장과 사무처장은 의장이 평의원 중에서 추천하여 재적 평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8. 3. 23.)

② 삭제<개정 2005. 1. 5.>

제3장 회의

제7조(심의사항) 교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이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총장·교수회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3. 평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4. 교수회 구성원의 5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교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의장은 교수회 회의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④ 임시총회는 총장, 의장 또는 재적교수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⑤ 교수회의 심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교수회가 성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의회에서 심의한다.

제9조(회의공개) ① 의장은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청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7. 7. 14.)

②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을 제한할 수 있고, 방청인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장 교수평의회

제10조(설치) 학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의기구로서 교수평의회를 둔다.(개정 2017. 7. 14.)

제11조(심의사항) 평의회는 학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7. 14.)

1. 제8조 제6항에 의하여 부의된 사항

2. 의장이 심의 요구한 사항

제12조(구성 및 임원) ① 평의회는 교수회의장 1명·부의장 1명 및 단과대학 교수회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의회 의 임원은 교수회의장·부의장·사무처장이 겸임한다.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선출) ① 평의원은 각 단과대학교수회에서 무기명·직접·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② 단과대학의 평의원 수는 교수회 구성원 15명당 1명의 비율로 하고, 단과대학별 최소 3명, 최대 5명 이하로 하며(약학대학은 1명), 학과(전공)별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 인쇄전자공학과는 공과대학에 포함한다. (개정 2011. 5. 30, 2014. 3. 27)

③ 단과대학 소속 교수는 교수회가 배포한 교수명단 중 3명에게 기표하고 단과대학은 이를 집계하여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동점자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 순위로 결정한다. (신설 2011. 5. 30)

제14조(개선 및 보선) ① 각 단과대학은 평의원의 임기만료 14일 전까지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② 단과대학은 평의회 구성을 위한 투표결과를 보관하고, 평의원 임기 중 결원 발생시 차순위자를 순차적으로 당선인으로 결정하여 14일 이내에 교수회에 통보한다. (개정 2011. 5. 30)

③ 평의회 임기 중에 단과대학별 교수정원에 변동이 있더라도 평의원 정원은 임기 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단과대학 교수의 30%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평의원 정원을 재조정하고 재선거를 통해 평의원을 선출한다. 이때의 평의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신설 2011. 5. 30)

제15조(겸직금지) 학무위원, 부처장·부단장 및 이 대학교 학칙 제13조제1항의 부속시설의 장은 평의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1. 5. 30, 2013. 12. 31)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총장·의장 또는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평의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17조(회의공개) 평의회의 회의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8조(위원회) ① 평의회에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다.

③ 평의원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제19조(세칙) 평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평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20조(재정) 교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이 대학교 예산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21조(행정지원) 교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자료제출요구) 의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내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2003. 10. 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제정 당시의 교수회 임원 및 평의회 평의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만료일은 제3조 제6항 및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6월 10일로 한다.

② 교수회 관련 학칙 개정 공포일(2003. 5. 23)로부터 이 규정 공포 전의 교수회 및 평의회의 사무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1.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6.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3.)